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36914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369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3나490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가합89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A

판결 선고 2016. 1. 14.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3나4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장하는 ① 약정한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책임 소멸 주장,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24. 법률 제10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책임 소멸 주장, ③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4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증채무 감면 주장, ④ 한정근보증 요건 불비에 따른 보증계약 효력 제한 주장, ⑤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제한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증인보호법의 각 규정과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